



강남구



수 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
(경유)

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(대치동 5-3(도), 서울산업진흥원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기관의 우리구 관내 대치동 5-3(도로)에 대한 무단점용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(건설관리과-7596, 2017.4.7.)을 하였으나, 기한(2017.4.21.)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[별표5] 제3호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납부대상자 : 서울산업진흥원

나. 점 용 지 : 대치동 5-3(도로)

다. 부 과 사 유 : 원상회복명령 미이행

라. 부 과 근 거 : 도로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[별표5]3호

마. 부 과 액 : 금1,000,000원

바. 납 부 기 한 : 2017.6.9.

3. 아울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00조 제4항에 의거 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니, 조속한 시일 내에 기 통지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100조 제8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.

붙 임 :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1부(별도송부). 끝.



주무관 **조현근** 건설행정팀장 **이갑열** 건설관리과장 전결 05/18
심인식

협조자

시행 건설관리과-13233 (2017.05.18.) 접수 SETEC팀-777 (2017.05.19.)

우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
전화 02-3423-6515 / 전송 02-3423-8851 / 비공개(6)